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 무배당 Chubb New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24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질병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Chubb New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2404

※단, 판매채널, 플랜에 따라 보험종목의 명칭 중 'Chubb' 부분의 명칭을 생략 및 다르게 할 수 있음.  
(보험종목의 명칭 사용 예시: 무배당 New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2404 등)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보장내용  | 최대 보장기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b>[기본계약]</b><br>- 암진단보장 및 만기환급금(갱신형)<br>- 특정소액암진단보장(갱신형)<br>- 유사암진단보장(갱신형)<br><br><b>[선택특약]</b><br>-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br>- 뇌출혈진단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br>-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br>- 암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10년<br>20년 | 5년만기 | 5년납      | [최초계약]<br>20세~70세<br>[갱신계약]<br>25세~75세 | 월납, 연납   |
| <b>[선택특약]</b><br>-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br>-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br>-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br>-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갱신형)<br>-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 10년        | 5년만기 | 5년납      | [최초계약]<br>20세~70세<br>[갱신계약]<br>25세~75세 |          |

- 주) 1.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은 동일한 갱신주기로 운영함. 단,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갱신형),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은 최대보장기간을 10년으로 운영함.
2.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특약의 가입연령은 기본계약의 가입연령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 또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갱신에 대한 사항

- (1) 대상: 기본계약 및 전 특별약관
- (2)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본계약 및 전 특별약관은 매 5년마다 갱신되며, 최대보장기간 내에서 자동 갱신됨.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
  -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함
- (3) 갱신계약 약관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가입시점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함. 다만, 법령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함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4) 보험료의 납입방법: 갱신계약 보험료가 갱신전 보험료와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적용함.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보험가입금액 제한에 관한 사항

- 가. 기본계약의 최대가입금액
- 나.

| 구분       |                    | 최대가입금액     |            |
|----------|--------------------|------------|------------|
|          |                    | 최대보장기간 20년 | 최대보장기간 10년 |
| 기본<br>계약 | 암진단보장 및 만기환급금(갱신형) | 4,000만원    | 2,000만원    |
|          | 특정소액암진단보장(갱신형)     | 400만원      | 200만원      |
|          | 유사암진단보장(갱신형)       | 200만원      | 100만원      |

다. 기본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적용

- ‘특정소액암진단보장(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암진단보장 및 만기환급금(갱신형)’ 보험가입금액의 0.1배로 함
- ‘유사암진단보장(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암진단보장 및 만기환급금(갱신형)’ 보험가입금액의 0.05배로 함

17.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1)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2)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 (4)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 (5)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6)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18. 피보험자 범위

가. 피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1) 고혈압진단자
- (2) 당뇨병진단자

나. “고혈압진단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1)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수축기혈압(최대혈압, SBP)의 수치가 140mmHg 이상인 자
- (2)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이완기혈압(확장기혈압 또는 최저혈압, DBP)의 수치가 90mmHg 이상인 자
- (3)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현재 혈압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다. “당뇨병진단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1)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된 공복혈당의 수치가 126mg/dL 이상인 자
-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현재 혈당강화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자

## 19. 기타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 (2) “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본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고지한 병력 사항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부보기간 (1년~5년, 또는 전 기간)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하고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별첨〕)을 받아야 함. 다만,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약자가 [별첨]을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별첨]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경우

(3) 기타

- 회사는 통신판매(TM, 홈쇼핑 등)시 효율적인 상품설명을 위하여 판매플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음.
- 플랜의 선택은 계약자의 결정에 의하며, 플랜이 포함하고 있는 선택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4) 계약 변경(표준체 전환시)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가 더 이상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 대상이 아닌 보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장내용 등)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의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함
-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정산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정산함.

(5) 상품판매시 고객안내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상품 판매시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일반 유사상품과의 보험료비교표를 제공함

- 피보험자가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가 아닌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혈압진단자' 또는 '당뇨병진단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동일한 기준의 보장담보로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기준의 보장담보란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장내용 등이 동일한 보장담보를 말합니다(단, 만기환급금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제휴업체(라이나생명)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이하 '케어매칭 서비스' 라함)를 구매하여 제공함.
- (2) '케어매칭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가 부가된 보험계약을 정상 유지하는 동안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제공함.
- (3) '케어 매칭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라이나생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라이나생명)에 있음.
- (4) '케어 매칭 서비스'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 [별첨1] 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 확인

---

- 이 “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은 유병력으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지한 병력 사항에 대하여 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회사가 지정한 특정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그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부담 보기간(1년~5년, 또는 전 기간)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설계사 \_\_\_\_\_(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계약자 \_\_\_\_\_(인/서명)

---

**Chubb. Insured.<sup>SM</sup>**